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8호(號) 1927(昭和 2)년 9월 30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07호(號)

1927(昭和 2)년 4월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9월 30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국선(局線) 내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목재(木材)의 항(項) 단동(安東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 발(發) 국선(局線) 및 조선(朝鮮) 내(內) 연대선(連帶線) 착(著) 임률(賃率) 표(表) 중(中) 「2만 톤(噸·ton) 이상(以上)」을 「3만 톤(噸·ton) 이상(以上)」으로, 「2만5천 톤(噸·ton) 이상(以上)」을 「3만5천 톤(噸·ton) 이상(以上)」으로, 「3만 톤(噸·ton) 이상(以上)」을 「4만 톤(噸·ton) 이상(以上)」으로, 동(同) 기사(記事)1 중(中) 「1927(昭和 2)년」을 「1928(昭和 3)년」으로 개정(改正)함.